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대책 발표 -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①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안정성 강화**, ② **운영단계에서는 점주 협상력 제고와 법집행 강화**, ③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점주(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창업단계: 창업 안정성 강화

핵심 과제 (개정 대상)	주요 내용	완료 시점 (예정)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서 심사체계를 등록제(사전심사)에서 공시제(사후심사)로 전환(단, 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제 유지) -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허위 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 	‘27년 상반기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시행령·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개편 <table border="1" data-bbox="571 1765 1251 2078"> <thead> <tr> <th>주요 추가 항목(안)</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맹점주 비용결제 정보</td> <td>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 결제 가능 여부</td> </tr> <tr> <td>가맹점 장기 생존가능성 정보</td> <td>장기운영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td> </tr> <tr> <td>제휴계약 세부내역</td> <td>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제휴계약의 기간, 비용, 제휴조건</td> </tr> </tbody> </table> - 정보공개서 목차를 창업-운영-폐업 순으로 개편 	주요 추가 항목(안)	세부 내용	가맹점주 비용결제 정보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 결제 가능 여부	가맹점 장기 생존가능성 정보	장기운영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제휴계약 세부내역	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제휴계약의 기간, 비용, 제휴조건	‘26년 상반기
주요 추가 항목(안)	세부 내용									
가맹점주 비용결제 정보	카드 사용 가능 여부, 분할 결제 가능 여부									
가맹점 장기 생존가능성 정보	장기운영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생존율,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제휴계약 세부내역	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 제휴계약의 기간, 비용, 제휴조건									

핵심 과제 (개정 대상)	주요 내용	완료 시점 (예정)
직영점 운영의무(1+1제도) 확대 【법·시행령】	- '동일 업종의 직영점(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 서 등록을 허용'하였던 직영점 운영의무 를, 기존 신규 등록시 에만 적용하던 것에서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	`26년 하반기
숙고기간 제도 합리화 【법】	- 가맹본부와 고용관계 , 가맹본부 임원과 특수관계 없는 가맹 거래사·변호사 자문 시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	`26년 상반기

나. 운영단계: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핵심 과제 (개정 대상)	주요 내용	완료 시점 (예정)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 도입 【법·시행령】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여 공적 대표성 부여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26년 하반기
점주단체 협의 의무제 도입 【법·시행령】	- 점주단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 공정위시정명령→(불응시)고발→(형벌)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단, 협의요청 횟수 제한, 정당한 협의거부 사유 도입, 복수 점주 단체와의 일괄협의절차 등 부작용 완화 장치도 함께 마련	`26년 하반기
공정위 법 집행 강화 【-】	-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점포환경개선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제재 -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 이행 여부 점검 :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준수 여부	상시

다. 폐업·계약 갱신단계: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핵심 과제 (개정 대상)	주요 내용	완료 시점 (예정)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법·시행령】	-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권 도입	`27년 상반기

핵심 과제 (개정 대상)	주요 내용	완료 시점 (예정)
중도 폐업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 【시행령·고시】	- 정보공개서에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영업위약금을 명시해 계약 중도해지 가맹점의 잔여 기간별 평균 부담액 기재	`26년 상반기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 보완 【법·시행령】	-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 통지의무 부과: 통지의무 미이행시 가 맹점주는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미갱신 통보권 행사 가능	`27년 상반기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 확대 【법】	-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만료 전 180일~90일) 내 가맹점주 요청시 정보공개서 열람 의무화	`26년 상반기

2. 시사점

이번 종합대책은 가맹점 생애주기(창업-운영-폐업) 전 단계를 아울러, ▲정보공개서 공시제, ▲점주단체 등록제, ▲계약해지권 명문화 등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이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대책인 만큼, 가맹본부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제도개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부당한 구입강제, 비용 전가 및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민원이 빈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엄중 제재를 예고하였습니다. 종합대책 항목 중 불공정행위 감시 및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 이행여부 점검은 제도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공정위가 즉시 법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하여 이에 미리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eas

공정거래

Contact

윤정근 변호사

02-528-5179

jkyun@yulchon.com

박성범 변호사

02-528-5840

sbpark@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02-528-5923

cschung@yulchon.com

황윤환 변호사

02-528-6464

yhhwa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02-528-5724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02-528-5633

shhan@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02-528-5860

khkim@yulchon.com

류송 변호사

02-528-6473

sryu@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02-528-5590

sjlee@yulchon.com

최유미 변호사

02-528-6442

ymchoi@yulchon.com

강성일 변호사

02-528-5920

sikang@yulchon.com

이우열 변호사

02-528-5906

wylee@yulchon.com

박양진 변호사

02-528-6472

yjpark@yulchon.com

이충민 변호사

02-528-5750

cmlee@yulchon.com

김건웅 변호사

02-528-5963

kwkim@yulchon.com